

제 1272 호  
1986. 4. 21

발행처: 서울특별시청 남문로  
 편집인: 공보관 이관우  
 전화: 731-6111  
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산동  
 전화: 735-3337

계	보도계	공보담당	공보관	공보관
---	-----	------	-----	-----

# 시 보

## 차 례

- ◎ 고 시
  - 제 248 호 : 쇠고기 및 돼지고기 원 등 가격 결정 ..... 2
  - 제 256 호 : 도시계획용도 (상업) 지역 지정 승인 ..... 2
- ◎ 공 고
  - 제 231 호 : 도시계획안 공고 ..... 3
- ◎ 사 령

일									
월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표는 영문본과 함께 판독할 것이다.

# 서울특별시

**고 시**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48 호

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

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(농수산부 고시 제 85-47호 85.8.22)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6. 4. 22.

서울특별시장

1. 쇠고기 연동가격  
쇠고기(정육 500그램당) 3,200원
2. 돼지고기 연동가격  
돼지고기(정육 500그램당) 1,800원

가. 최저승인 고시내역

단위: 원

지 역 별 기 정	변 정	변 정 후	비 고
체	708,387,000	708,387,000	
주 거 지 역	282,641,184	(감) 530 282,640,654	
준 주 거 지 역	3,389,048	3,389,048	
주 거 전용 지 역	5,224,886	5,224,886	
상 업 지 역	21,219,394	(증) 530 21,219,924	
자연 녹지 지 역	359,826,627	359,826,627	
생산 녹지 지 역	5,205,200	5,205,200	

나. 도면 및 조서별첨(생략)

3. 시 행 일

1986. 4. 22부터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56 호

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적승인고시

1. 건설부 고시 제 134 호(86.3.27)로 도시계획 용도 지역변경 결정된 강남구 신사동 501의 2 및 1번지 일대(530㎡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6. 4. 23

서울특별시장

**공 고**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31 호

도 시 계 획 안 공 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61 호(84.5.11) 및 같은고시 제 68 호(86.2.1)로 시행허가 및 변경허가한 도시계획사업(시장)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일부 변경요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의 2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나 의견이 있을 때는

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바람

1986. 4.22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자: 구로구 시청동 966번지 일대
- 나. 사업의종류 및 경칭: 도시계획사업(시장), 서울중앙철도관리청상가
- 다. 사업시행자 주소상명 당초: 성동구 중곡동 120-25 최수영외 204인  
변경: 성동구 중곡동 120-25 최수영외 210인
- 라. 공람기간: 86.4.23 - 86.5.6(14일)
- 마. 공람장소: 구로구청 도시정비과
- 바. 기 타: 사업시행자의 일부 변경분으로 인한 실락하며 관련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공람함.

**사 령**

1986년 4월 22일

령제 184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김 평 실	비상계획과(수도권 대비정규전 종합훈련요원) 파견 ( '86.4.23 - 별도지시시까지 )	강 서 구	지방행정과장

령제 185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이 상 현	환경관리사업소준비반 파견 ( '86.4.23 - 별도지시시까지 )	전 자 배 선 소	지방행정주사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	
홍성배	한강관리사업소준비단 파견 ( '86. 4. 23 - 별도지시시까지 )	시·삼계회과	지방행정사	
서순동	"	관악구	지방토목사보	
박성권	"	동작구	지방농림사원	
1986년 4월 21일			명제 186 호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	
양해선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	북부위생처리장	지방행정사기보	
1986년 4월 22일			명제 187 호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	
전영배	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 제 10 조에 의하여 부직을 명함.	강동구	지방별정직 7 급 상당	
1986년 4월 23일			명제 190 호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위	직급
경환석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"전책"에 처함.	강동구	시민국장	지방사기관
이경만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"전책"에 처함.	성북구	재무국장	"
이장열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"전책"에 처함.	도봉구	시민국장	"
김영신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"전책"에 처함.	종로구	사회복지과장	지방행정사무원
서울특별시청				